

「변호사시험법」을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에 맞게 제정하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건식(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외 24人)는 「변호사시험법」의 부결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전체 법학전문대학원의 의견을 표명하는 바이다.

I. 예비시험 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와 모순되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1. 예비시험은 법조인양성제도를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2. 법학전문대학원이 부유층만을 위한 제도라는 주장은 현실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논거가 될 수 없다.
 -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미 '신체적 또는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함으로써 법령상 취약계층의 입학을 실천하고 있다.
[붙임2-자료1 참조]
 - 법학전문대학원의 장학금 비율은 전액 기준으로 평균 39%에 이른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도 입학 자격만 갖추면 장학금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다.
[붙임2-자료2 참조]
 -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당 평균 등록금(국립33만원, 사립58만원)은 일반대학원(국립42만원, 사립77만원)보다 오히려 낮다. [붙임2-자료3 참조]

II.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변호사시험은 의사고시와 마찬가지로 '응시자의 80%이상'이 합격'하도록 해야한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는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50%이상' 참여해야 한다.

1.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에 필요한 법조 기본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상적으로 교육받은 졸업생은 모두 합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총 정원이 2,000명으로 엄격히 제한된 상황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학하여 3년간 법률이론 및 실무를 집중적으로 훈련받은 학생들을 굳이 탈락시켜야 할 이유가

없다.

- 학생들이 기본법 위주의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전문분야의 강의를 외면하지 않도록 변호사시험 합격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
- 특히 현재 변호사시험법안에서는 합격률에 대한 법령상의 기준 없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만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안정성을 크게 해친다.

2.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 양성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이다. 변호사시험이 법학교육내용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추천하는 법학교수를 50%이상 참여시켜야 한다. [붙임2-자료4 참조]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합격의 결정 방법뿐만 아니라 출제방향 및 기준, 시험방법 및 채점기준 등 변호사시험의 관리 일체를 담당하므로, 변호사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반수이상 참여해야 한다.

Ⅲ. 변호사시험의 시험 과목과 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해야 한다.

1. 정부법안의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은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비해 세부과목수가 더 많아 학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므로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붙임2-자료5 참조]

- 시험 과목 수가 많으면 학생들은 시험과목 이외의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여유를 가지지 못한 채 시험 준비에 더 매달리게 될 수밖에 없다.

2. 논술형 필기시험에 포함된 '실무능력 평가'는 그 의미하는 바가 반드시 명확하지 않아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법학전문대학원과 협의하여 적절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25개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변호사시험법」을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에 맞게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 2. 25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회원교 (25人)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붙임 2】 참고 자료

[자료-1] 특별전형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2항 (입학전형의 구분)

: 특별전형은 법 제22조에 따른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중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장애인 등 신체적 또는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한다.

※ 200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결과, 특별전형에서 총 정원의 6%(125명) 선발.
(현재 국민의 3.2%가 기초생활수급자임)

[자료-2] 전액 장학생 비율

대 학 명	전액 장학생 비율	대 학 명	전액 장학생 비율
강 원 대	100%	영 남 대	48.8%
건 국 대	75%	원 광 대	43%
경 북 대	21.3%	이 화 여 대	41.7%
경 희 대	25%	인 하 대	44.7%
고 려 대	20%	전 남 대	24.7%
동 아 대	34.2%	전 북 대	50%
부 산 대	30%	제 주 대	32%
서 강 대	37.5%	중 앙 대	55.1%
서 울 대	25.2%	충 남 대	31.4%
서울시립대	41.9%	충 북 대	25%
성 균 관 대	37.3%	한 국 외 대	20%
아 주 대	25%	한 양 대	55%
연 세 대	32%	25개교 평균	39%

구 분	법학전문대학원 (‘09학년도 기준)	*사립대학 (‘08학년도 기준)
평균 전액 장학생 비율	39% (최소 20% ~ 최대 100%)	16.2%
비교 결과	법학전문대학원이 사립대학에 비해 2.4배 많은 혜택	

* 2007 회계연도 사립대 재정통계 조사 결과, 한국사학진흥재단(‘08.10.30)

[자료-3] 200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연간 등록금

국.공립	연간 등록금 (만원)	사립	연간 등록금 (만원)
강 원 대	1,000	건 국 대	1,600
경 북 대	1,014	경 희 대	1,760
부 산 대	945.6	고 려 대	1,900
서 울 대	1,350	동 아 대	1,800
서울시립대	910.6	서 강 대	1,440
전 남 대	963.2	성 균 관 대	2,000
전 북 대	930	아 주 대	1,800
제 주 대	1,000	연 세 대	1,950
충 남 대	863	영 남 대	1,840
충 북 대	980	원 광 대	1,500
		이 화 여 대	1,680
		인 하 대	1,800
		중 앙 대	1,530
		한 국 외 대	1,600
		한 양 대	1,800
10개교 평균	996	15개교 평균	1,733

법학전문대학원과 일반대학원 비교(평균 등록금, 이수학점 등)

구 분	법학전문대학원 (‘09학년도 기준)		일반대학원 (‘08학년도 기준)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연간 평균 등록금	996만원	1,733만원	498만원	952만원
평균 학점이수	30학점 (3년간 90학점)		12학점 (2년간 24학점 이상)	
학점당 평균 등록금	33만원	58만원	42만원	79만원
비교 결과	학점당 등록금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일반대학원에 비해 (국.공립 22%, 사립 27%) 저렴			

[자료-4] 각 관리위원회 비교

사법시험법	변호사시험법안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의견
<p>사법시험관리위원회 (법무부 장관 위촉)</p> <p>법무부장관 1인, 법무부차관 1인, 판사 2인, 검사 1인, 변호사 2인, 법학교수 3인, 비영리민간단체 1인, 일반인 2인</p> <p>[총13인]</p> <p>*법조인 구성비 54%</p> <p>*법학교수 구성비 23%</p>	<p>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법무부 장관 위촉)</p> <p>법무부차관 1인, 법학교수 4인, 판사 2인, 검사 2인, 변호사 4인, 일반인 2인</p> <p>[총15인]</p> <p>*법조인 구성비 60%</p> <p>*법학교수 구성비 27%</p>	<p>법학교육위원회 (교과부 장관 위촉)</p> <p>법학교수 4인, 판사 1인, 검사 1인, 변호사 2인, 교육공무원 1인, 일반인 4인</p> <p>[총13인]</p> <p>*법조인 구성비 31%</p> <p>*법학교수 구성비 31%</p>	<p>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에는 실제 교육을 담당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50%이상 참여 해야 함.</p>

[자료-5]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안의 시험과목/기간 비교

구분	사법시험	변호사시험법안
시험 과목	제1차시험 (선택형) 헌법, 민법, 형법, 선택1과목, 공인영어성적	선택형 공법 (헌법 . 행정법), 민사법 (민법 . 상법 . 민사소송법), 형사법 (형법 . 형사소송법)
	제2차시험 (논술형)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논술형 (실무능력 평가를 포함) 공법 (헌법 . 행정법), 민사법 (민법 . 상법 . 민사소송법), 형사법 (형법 . 형사소송법) 선택1과목
	제3차시험 (면접시험)	법조윤리시험
	※ 선택1과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 적재산권법, 경제법, 형사정책, 법철학)	※ 선택1과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 (과목 미정)
시험 기간	1~3차에 나누어 실시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은 같은 시험기간 내에 연속하여 치름
비교 결과	변호사시험에서 선택형 필기시험의 세부과목수가 사법시험에 비해 더 늘고, 시험준비 기간은 더욱 짧아짐(기존보다 더욱 강화되었음)	